

# [ 정 정 대 비 표 ]

## ■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

펀 드 명	BNK공모주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정 정 서 류	(간이)투자설명서
정 정 사 유	운용전문인력 변경 및 직판 클래스 신설,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효 력 발 생 일	2022년 06월 01일

## ■ 정정대비표

### [간이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<b>[요약정보]</b>			
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변경	* 주식 책임운용전문인력: 김우람 * 채권 책임운용전문인력: 김경석	- 2022.05.12 기준으로 업데이트 * 주식 책임운용전문인력: 이건민 * 채권 책임운용전문인력: 성동원
매입방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2영업일(D+1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-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	-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2영업일(D+1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-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
환매방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제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제4영업일(D+3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-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제4영업일(D+3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제5영업일(D+4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	-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4영업일(D+3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-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4영업일(D+3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5영업일(D+4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직판 클래스 신설	<신설>	온라인직접판매(J-e): <u>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.</u>

### [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용어 변경	자본시장법 시행령	- <u>대차대조표</u>	- <u>재무상태표</u>

	개정사항 반영	- 전자단기사채	- 단기사채
<b>[요약정보]</b>			
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변경	* 주식 책임운용전문인력: 김우람 * 채권 책임운용전문인력: 김경석	- 2022.05.12 기준으로 업데이트 * 주식 책임운용전문인력: 이건민 * 채권 책임운용전문인력: 성동원
매입방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2영업일(D+1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-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	-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2영업일(D+1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-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: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
환매방법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제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제4영업일(D+3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-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제4영업일(D+3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제5영업일(D+4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	-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3영업일(D+2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4영업일(D+3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 -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: <u>4영업일(D+3)</u> 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. <u>5영업일(D+4)</u> 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 지급
집합투자기구의 종류	직판 클래스 신설	<신설>	온라인직접판매(J-e): 집합투자업자가 개설한 모바일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 집합투자기구입니다.
<b>제1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직판 클래스 신설	<신설>	- J-e, J-Pe, J-P2e 추가
<b>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b>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직판 클래스 신설	<신설>	- J-e 추가 - J-Pe 추가 - J-P2e 추가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-	- 2022.06.01: 운용전문인력 변경 및 직판 클래스 신설,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운용전문인력 변경	* 주식 책임운용전문인력: 김우람 * 채권 책임운용전문인력: 김경석	- 2022.05.12 기준으로 업데이트 * 주식 책임운용전문인력: 이건민 * 채권 책임운용전문인력: 성동원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직판 클래스 신설	가. (생략) 나. 종류형 구조	가. (현행과 동일) 나. 종류형 구조

		<신설>	- J-e, J-Pe, J-P2e 추가
<p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</p>	<p>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가. 투자 대상</p> <p>① 채권: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<u>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.</u>),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- 이상인 것) 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</p> <p>①-1 ~ ② (생략)</p> <p>③ 자산유동화증권: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“자산유동화증권”이라 한다)</u></p> <p>④ ~ ⑪ (생략)</p> <p>나. 투자 제한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이 투자신탁 ~ 있다.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--- (생략)---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) 또는 어음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</u></p>	<p>가. 투자 대상</p> <p>① 채권: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<u>사채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.</u>),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 등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- 이상인 것) 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</p> <p>①-1 ~ 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자산유동화증권: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<u>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“자산유동화증권”이라 한다)</u></p> <p>④ ~ ⑪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 투자 제한</p> 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이 투자신탁 ~ 있다.</p> <p>가.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--- (생략)---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) 또는 어음 <u>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</u></p>

		<p>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---(이하 생략)---</p> <p>다. (생략)</p> <p>③ ~ ⑨ (생략)</p>	<p>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---(이하 현행과 동일)---</p> <p>다.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~ ⑨ (현행과 동일)</p>
<p>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</p>	<p>직판 클래스 신설</p>	<p>가. 매입</p> <p>(1) (생략)</p> <p>(2) 종류별 가입자격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(가)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</p> <p>⇒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2영업일(D+1)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.</p> <p>(나)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</p> <p>⇒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제3영업일(D+2)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.</p> <p>(다) (생략)</p> <p>(4) (생략)</p> <p>나. 환매</p> <p>(1) (생략)</p> <p>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(가)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</p> <p>⇒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제3영업일(D+2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제4영업일(D+3)</u>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<p>(나)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</p> <p>⇒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제4영업일(D+3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</p>	<p>가. 매입</p> <p>(1) (현행과 동일)</p> <p>(2) 종류별 가입자격</p> <p>- J-e, J-Pe, J-P2e 추가</p> <p>(3)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(가)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</p> <p>⇒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2영업일(D+1)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.</p> <p>(나)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</p> <p>⇒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<u>3영업일(D+2)</u>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.</p> <p>(다) (현행과 동일)</p> <p>(4)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환매</p> <p>(1) (현행과 동일)</p> <p>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(가)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</p> <p>⇒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3영업일(D+2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4영업일(D+3)</u>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<p>(나)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</p> <p>⇒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4영업일(D+3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</p>

		격을 적용하여 제5영업일(D+4)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(이하 생략)	을 적용하여 5영업일(D+4)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(이하 현행과 동일)
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상</u> 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 을 그 공고·게시일 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	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상</u> 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 을 그 공고·게시일 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직판 클래스 신설	- <신설>	-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- J-e, J-Pe, J-P2e 추가
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직판 클래스 신설 및 과세 관련 내용 업데이트	가. 이익배분 ·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 나. 과세 (1)~(3) (생략)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 <u>Class C-P, C-Pe 및 S-P 가입자</u> (이하 생략) 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<u>Class C-P2, C-P2e 및 S-P2 가입자</u> (이하 생략)	가. 이익배분 ·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 나. 과세 (1)~(3) (현행과 동일)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 <u>Class C-P, C-Pe, S-P 및 J-Pe 가입자</u> (이하 현행과 동일) 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<u>Class C-P2, C-P2e, S-P2 및 J-P2e 가입자</u> (이하 현행과 동일)
<b>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b>			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[의무해지] (생략) [임의해지] ▶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	[의무해지] (생략) [임의해지] ▶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소규모 투자신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 전환,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회사와 협의하

		여 정하며,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한국예탁결제원</u>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.	여 정하며, 동 규정에 의거 이 투자신탁을 임의로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 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.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p>가. 정기보고서</p> <p>(1) (생략)</p> <p>(2) 자산운용보고서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<u>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</u> 다만,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</p> <p>(이하 생략)</p>	<p>가. 정기보고서</p> <p>(1) (현행과 동일)</p> <p>(2) 자산운용보고서</p> <p>-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<u>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</p> <p>(이하 현행과 동일)</p>

<끝>.